
2018년 19차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2018. 11.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2018년 제19차 정보공개심의회 」 회의

〈회의개요〉

- ◆ 일 시 : 2018.11. 8.(목) 10:00 ~ 11:30
- ◆ 장 소 : 시청 본관 4층 공용회의실
- ◆ 참 석
 - 심의위원 : 정호경, 성춘일, 심연섭, 이유진, 최진수
 - 배 석 : (간사) 정보공개정책과장 (서기) 정보공개지원팀장
- ◆ 안 건 : 이의신청 4건
 - (2018-67 청구인 이의신청)서부간선도로·서울제물포터널 민간 투자사업 지하수분과 현장조사단 현장점검 결과보고
 - (2018-68 청구인 이의신청)‘마곡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 제6차 분양변경 입주계약 체결계획’ 문서의 계약상대방, 계약내용, 변경 입주계약서(안) 등
 - (2018-69 청구인 이의신청)‘지원시설용지 입주계약서 명의변경 요청 민원에 따른 의견요청’ 문서의 민원인 성명, 민원서
 - (2018-70 제3자 이의신청)재단법인 00000장로회 00000000 재단 설립 관련 정관(기본재산, 발기인 주소 및 날인 제외), 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제외), 법인설립허가증(안)(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제외) 등

◆ 심의결과(안건 순 배열)

- 인용
- 인용
- 부분인용
- 기각

【 의안번호 2018-67 청구인 이의신청 】

안건명 : 서부간선도로·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지하수분과 현장조사단
현장점검 결과보고

〈○○○ 위원〉

- 안녕하십니까? 제2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입니다. 오늘 심의회는 심의 위원으로 ○○○ 위원님, ○○○ 위원님, ○○○ 위원님, ○○○ 위원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제19차 정보공개심의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이번 심의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 4건으로 청구인 이의신청 3건, 제3자 이의 신청 1건입니다.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 건마다 상정 안건에 대해 간사가 보고를 드리고 주심위원님께서 해당안건의 심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각 주심위원님께서서는 해당안건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진행 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결정안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종결정사항은 위원장이 선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안과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심의위원 7명 중 5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8년 제19차 정보공개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

- 의안번호 제2018-67호 방재시설부 소관 이의신청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소관부서 입장)

<○○○ 위원>

- 안전 소관부서 과장님은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

-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에 근무하고 있는 ○○○이라고 합니다.

<○○○ 위원>

- 간사는 소관안전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 의안번호 제2018-67호 방재시설부 소관 이의신청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구인은 서부간선도로·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지하수분과 현장조사단 현장점검 결과보고 결재문서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주관부서에서는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중인 사항으로 공개 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이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 시 개인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와 제6호의 규정에 의거 비공개 결정을 하였습니다.
- 이에 청구인은 해당 결과보고는 공사현장에 대한 사실적 내용이 기술된 보고서 가치판단이나 왜곡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지 않아 공개 시 공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하여 본 심의회에 이의신청 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 안전 소관부서 과장님은 간사가 낭독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 과장>

○ 내용부분에 대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큰 이의는 없습니다.

<○○○ 위원>

○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전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안전은 주심위원 이신 ○○○ 위원님께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 이 공사가 언제까지 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까?

<○○○ 과장>

○ 개통일자가 2020년 10월입니다.

<○○○ 위원>

○ 현장점검은 공사현장에서 지하수가 대량 유출됨으로 인한 안전문제가 생겨서 특별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원래 계획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 과장>

○ 원래 계획은 없었습니다.

<○○○ 위원>

○ 문제가 되니까 특별히 점검하셨나보죠?

<○○○ 과장>

- 비상대책위원회, 현재 자료를 요청하신 분들께서 지하수가 유출되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현장사진과 동영상을 찍어서 JTBC 뉴스에다 제보하셨더라고요. 실제로 지하수와 관련해서는 안전성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그 간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도 유량이나 지하수위계 같은 것을 체크를 하고,

<○○○ 위원>

- 왜 이것을 특별점검을 하게 됐는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뉴스에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현장점검을 하게 된 겁니까?

<○○○ 과장>

-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돌아보고 저희들이 해명자료를 냈는데, 실제로 잘못된 정보가 뉴스에 나오게 되면 공사에도 많은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진짜로 그분들 말씀대로 현장에 이상이 있는지 현장확인 차원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갔었던 겁니다.

<○○○ 위원>

- 결국은 뉴스에서 문제가 촉발돼서 해명하는 자료를 냈고,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네요.

<○○○ 과장>

- 네, 맞습니다.

<○○○ 위원>

- 1차 회의를 10월 8일 날 했고 2차 회의가 10월 15일 날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예정대로 10월 15일 날 실시됐습니까?

<○○○ 과장>

○ 모든 회의는 예정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 위원>

○ 이제 다 끝난 겁니까, 앞으로 현장점검계획이 더 남아있습니까?

<○○○ 과장>

○ 현장점검은 그때 1회로 한 번 끝났습니다.

<○○○ 위원>

○ 2차 때는 현장점검은 안 하고 회의만 한 겁니까?

<○○○ 과장>

○ 네. 지하수분과위원 분들이, 현장을 점검하셨던 분들이 또 다시 회의를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위원회 회의입니다.

<○○○ 위원>

○ 그럼 현장점검은 끝난 것이네요? 한 번으로 끝난 것이네요?

<○○○ 과장>

○ 현장점검은 1회로 끝났습니다.

<○○○ 위원>

○ 현장점검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고, 향후 절차가 어떻게 처리되니까?

<○○○ 과장>

○ 회의가 자문의 성격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기술적인 의견들을 서로 간에 활발

하게 이야기를 하는 내부적인 회의이고, 의견교환의 장소로 몇 차례 회의를 했었습니다.

<○○○ 위원>

-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지는 행정청에서 적절히 공사를 진행하면서 방향을 세워나가겠다는 취지이겠네요?

<○○○ 과장>

- 그분들의 자문의견은 공사를 하면서 더 보완할 사항은 보완하는 차원에서 활용하게 됩니다.

<○○○ 위원>

- 비공개 사유를 보면 의사결정 과정과 내부검토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부 검토는 현장점검이 다 끝났으니 종료된 것 아닙니까?

<○○○ 과장>

- 아직도 회의를 그간에 몇 차례 했고,

<○○○ 위원>

- 무엇을 위한 회의가 남은 겁니까?

<○○○ 과장>

- 말씀 그대로 지하수분과위원회니까 지하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 위원>

- 지하수 관련해서 어떤 안전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절차가 남아있는 겁니까?

<○○○ 과장>

○ 안전조치에 대한 사항은 이미 다 취해져 있었고 현장에서 봤을 때도,

<○○○ 위원>

○ 다 취해졌는데 혹시나 문제가 있을지 모를까봐 그 회의가 남아있는 겁니까?

<○○○ 과장>

○ 그 분들의 의견들이 전문가적인 사항이라서 쉽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 위원>

○ 그 분들의 의견이 요청자료에 안 나와 있습니다. 요청자료로 제출하신 자료가 결과보고 표지, 한 페이지 결과보고, 붙임서류로 현장점검 개요, 두 페이지에 걸친 사진, 서명한 참석자 서명부가 전부입니다. 이게 다가 맞습니까?

<○○○ 과장>

○ 맞습니다.

<○○○ 위원>

○ 거기 보면 점검결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만 들어있고, 평가나 분석이 안 들어있습니다. 아무것도 내용은 없습니다. ‘10월 10일까지 서류를 더 제공하겠다, 10월 15일 2차 회의를 하겠다.’ 이것이 전부고 거기에 대한 평가가 아무것도 안 들어있습니다. 위원들이 평가한 것은 2차 회의 때의 평가가 나와 있는 겁니까?

<○○○ 과장>

○ 자문회의가 평가는 아니죠.

〈○○○ 위원〉

- 네, 됐습니다. 표지에 보면 공개여부에 대해서 부분공개(6)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6호 사유 외에는 공개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 주무관〉

- 제가 기안을 한 담당자인데, 처음에는 6호 비공개로 기안을 했다가 저희가 이것은 검토과정이니깐 5호도 같이 설정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변경했습니다.

〈○○○ 위원〉

- 이 문서를 작성할 당시는 6호를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가 그 뒤에 이것이 5호에 의해서 공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 주무관〉

- 결재 올려놓고 나서 5호도 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을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 위원〉

-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는 결과보고라고 되어 있는 명칭과는 달리 평가나 판단 같은 것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향후계획과 행정사항으로 자문수당 얼마를 지급한다는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면 여기서 결정된 것이 아무 것도 없는데, 이것을 공개한다고 해서 업무수행에 어떤 지장을 초래합니까? 공사에 어떤 지장을 초래할까요?

〈○○○ 과장〉

- 공사에 지장을 초래해서 업무공개를 비공개한다는 것이 사유가 됩니까? 저는 공사가 진행이 된다,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법에 이렇게 안 될 경우에는 비

공개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 위원>

○ 그러면 비공개 사유가 뭐니까?

<○○○ 과장>

○ 현재 전반적인 점검을 포함한 위원회의 현장조사뿐만 아니라 몇 차례 회의들을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의사결정에 있는 과정이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자유롭게 내부회의에서도 의사를 교환할 수 있고 현장에서 보고 다른 의견을 내실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식견이 다른 입장에서 서로 간에 볼 수 있으니까요.

<○○○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

○ 네,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문 해 주십시오.

<○○○ 위원>

○ 민원인이 보고자 하는 것은 한마디로 결과보고라고 하는 이 세 장인 것이죠?

<○○○ 과장>

○ 지금은 그렇습니다.

<○○○ 위원>

○ 그런데 사실은 이 결과보고 3장을 공개하게 되면 뒤에 나오는 지하수위계측자료나 환경영향평가서 혹은 지질지반보고서, 실시계획 설계보고서 등을 또 공

개해 달라고 할까봐 공개를 안하는 것입니까?

<○○○ 과장>

- 환경영향보고서와 기타 보고서들은 별도로 시의원을 통해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미 시의원을 통해서 전달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

- 서울시 내에서 보도자료로 배포한 것을 보면 거기에 결과가 이미 대부분 나와 있고, 중요한 내용들은 그 것인 것 같아서 이해가 안갑니다.

<○○○ 과장>

- 이 보도자료는 실제로 배포한 것이 아니라 토목부에서 내부적으로 보고한 자료입니다.

<○○○ 위원>

- 설명자료가 배포한 자료는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 과장>

- 네. 정식으로 배포할 정도로 큰 이슈화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

- 그럼 지하수가 1,000톤이 넘게 샐다는 얘기는 잘못됐다는 말씀하신 겁니까? 지하수 유출이 없었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 과장>

-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실질적으로 하루에 1,000톤은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제 양평역이나 지하철역 같은 데에서도 하루에 2천 톤, 3천 톤 계속 양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길이가 7킬로 가까이 되는데, 터널 곳곳에서 나온 것들에 대한 물량을 다 합친 양입니다. 실제로 지하수분과위원회가 현장에서 다 점검하고 큰 이상은 없다고 보았고, 터널공사에서는 물을 완전히 차수하는 것은 수압 때문에 오히려 안전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비배수터널이 아닌 배수터널로 만든 겁니다.

<○○○ 위원>

- 지하수는 유출이 되고 다시 또 채워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계속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이죠?

<○○○ 과장>

- 지금은 터널을 굴진하기 위해서 라이닝 내부벽체를 아직은 안 한 상태인데, 내부벽체가 형성되면 폐합을 합니다. 터널공사의 폐합이 되면 어느 정도 복원이 됩니다. 전문가 위원들께서도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다’는 의견이고, JTBC에 제보하셨던 분들도 현장을 보시고 ‘큰 문제가 없고, 깨끗이 잘 관리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방송이 되는 바람에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 위원>

- 최근 지하수 유출 때문에 안전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계속 보도가 되고 실제로 사건도 발생을 하고 있어서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에서 충분히 안전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그러한 안전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이런 회의를 했다라는 것을 저는 공개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과장>

○ 아직 서로 간에 몇 차례 논의 중에 있습니다.

<○○○ 위원>

○ 그러면 논의가 끝나면 전체 내용을 공개하실 의향이 있으신 겁니까?

<○○○ 과장>

○ 논의가 끝나면 그 논의과정 중간에서 있었던 과정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봅니다.

<○○○ 위원>

○ 그럼 전체를 공개할 의사는 없으신 것이네요?

<○○○ 과장>

○ 결론이 어느 정도 방향성이 잡히고 그분들의 의견도 수렴이 되면, 그 수렴된 의견이 공개된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서로 간에 의견수렴 과정에 있고, 자유로운 논의가 되는 과정인데 그 논의되는 과정까지 결과적으로 다 공개를 해야 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 위원>

○ 논의하신 것이 이 현장점검에 관한 논의인 것인지, 그게 아니라 전체 공사에 관한 논의이신 것인지. 어떤 것에 관한 논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과장>

○ 그것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 위원〉

- 논의의 내용을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회의를 했었다’는 사실밖에 없습니다. 논의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닌지는 그것은 차치하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했었다라는 이 사실을 공개를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 과장〉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셔서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지금 이 사안은 논의내용을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고, 물론 이 전문가의 명단을 공개할지 안 할지는 차치하고 ‘10월 8일 날 이런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문제에 관해서 이런 회의를 했었다’라는 사실밖에는 나와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제 질문이 그겁니다.

〈○○○ 과장〉

- 아까 말씀드린 사항하고 같습니다. 지하수분과위원회의 위원이 참여한 회의이면서, 회의의 일부 중에서 현장을 점검한 사항입니다. 그 회의가 실질적으로 내부적인 의견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교환이 되려면 이것도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위원〉

- 옆에 계신 분은 제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안하셨다면서요.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걱정하시는 논의내용이 하나도 여기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문제에 관해서 이런 조사를 했고 회의를 했다’ 이게 내용의 전부인데, 왜 그 문제에 관해서 공개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듣

고 싶은 겁니다.

<○○○ 과장>

- 실질적인 이 청구인의 이의신청 내용으로서 어떠한 가치판단이나 왜곡의 가능성이 없는 문서이기 때문에 달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료의 왜곡이 그간에 한번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좀 우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 위원>

-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문 하십시오.

<○○○ 과장>

- 혹시나 이게 잘못된 왜곡으로 또 나갈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판단입니다.

<○○○ 위원>

- 이 자료를 가지고 왜곡 가능한 여지가 뭐가 있을까요? 그냥 저희가 봤을 때는 일단 현장사진하고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 과장>

- 그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판단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관부서 퇴장)

<○○○ 위원>

- 내용보다 심의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곡을 걱정한다는데, 특별히 사실관계를 확인해도 더 이상 확인할 것도 없고 나와 있는 것이 전부인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 위원>

- 개인정보 부분만 남겠네요.

<○○○ 위원>

- 명단만 제외하고,

<○○○ 위원>

- 청구 자체가 개인식별정보는 제외하고 공개해 달라고 청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하고 공개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두 번째 페이지에 전문가 6명의 성명과 소속은 개인식별정보이기 때문에 빼도 되지 않을까 싶고, 붙임2의 참석자 서명부는 전체를 빼도 될 것 같고요. ‘현장 점검 개요’가 붙임1에 나오는데 전문가 5명이 또 나옵니다. 그 다음 지도에 밑과 다음 페이지에 시공사 연락처 부분에 이름과 전화번호가 나오는데 이것도 인적정보라서 비공개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결과에 대한 가치판단이 들어있지 않고, 향후에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내용과 자문수당 지급한 것도 비공개 사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점검결과’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내용상 향후계획이고, 맨 앞의 점검 개요는 언제 어디서 누가 참석해서 했다는 정도 밖에 없습니다. 붙임1에도 회의개요와 이런 안건으로 이런 계획에 따라서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세부진행 계획과 현장사진밖에 없어서 비공개할 만한 것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 위원>

- 더군다나 진짜 중요한 내용이 환경영향평가서나 이런 결과자료인데, 그것은 또 시의회를 통해서 공개되어서 굳이 이 부분을 비공개해야 될 이유가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 위원〉

- 혹시 이것을 빌미로 그 청구를 할까봐 주저하는가 해서 여쭙았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서울시가 잘못했다라고 언론에 나온 것에 대한 방어를 하시고, 이것을 주면 뭔가 빌미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데, 보니까 빌미가 될 만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 위원〉

- 왜곡할 것도 없고, 왜곡을 하더라도 그것은 형사범죄가 되는 것 아닙니까?

〈○○○ 위원〉

- 저번에 12.8% 나가니까 ‘왜 12.8%냐. 어떤 데 조사해 보니까 4.8%인데’. 이렇게 논란이 되니까 뭐든지 공개하기 꺼리는 것이죠.

〈○○○ 위원〉

- 수치는 어떤 기준을 놓고 보느냐에 따라서 과도해 보일 수도 있고 적정해 보일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잘못 얘기할까봐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 위원〉

- 여기에서 빌미가 될만한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실시설계보고서나 이런 자료들이 있다는 정도인데, 그것도 이미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하니 이것을 공개해서 손상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

- ‘JTBC 보도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는 나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구간에서 유출된 양을 따지고 보면 많은 양은 아닙니다. 왜곡된 부

분이 있기는 한데 그것은 시에서 JTBC를 대상으로 대처할 부분이지, 민원인이 주장한 내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라고 보여서 저는 공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 일단 시민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이상은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고, 내용이 아무 것도 없는 것인데 이것까지 감추었다가 오히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소지도 있습니다.

〈○○○ 위원〉

- 그리고 민원인이 개인정보 사생활 침해되는 부분들은 다 삭제하고 공개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공개가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

- 저도 동의합니다.

〈○○○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집계결과 참석위원 전원이 이의신청 건을 인용한다는 의견이므로 본 안건을 인용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일동〉

- 네, 없습니다.

〈○○○ 위원〉

-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18-67호는 인용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안번호 2018-68, 69 청구인 이의신청 】

안건명

- ‘마곡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 제6차분양변경 입주계약 체결계획’ 문서의 계약 상대방, 계약내용, 변경 입주계약서(안) 등(2018-68)
- ‘지원시설용지 입주계약서 명의변경요청 민원에 따른 의견요청’ 문서의 민원인 성명, 민원서(2018-69)

※ 회의내용 중 일부 비공개 사항 제외

<○○○ 위원>

- 의안번호 제2018-68호, 69호 서남권사업과 소관 이의신청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소관부서 입장)

<○○○ 위원>

- 안건 소관부서 주무관은 소속, 직, 설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 주무관>

- 안녕하십니까? 서남권사업과 ○○○입니다.

<○○○ 위원>

- 간사는 소관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 의안번호 제2018-68호와 69호 서남권사업과 소관 이의신청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구인은 마곡산업단지 지원용지 분양자 명의변경 관련 두 건의 결재문제를 각각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주관부서에서는 제3자 의견조회를 거쳐 계약내용, 계약 상대방, 변경입주서 민원서류에 대해서는 공개 시 법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하여 비공개하고 이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공개결정을 하였습니다.
- 이에 청구인은 요청사항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하여 본 심의회에 이의신청 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 안건 소관부서 주무관은 간사가 낭독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 주무관〉

- 이의 없습니다.

〈○○○ 위원〉

- 본 안건은 주심위원이신 ○○○ 위원님, ○○○ 위원님이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

- 68호는 공개 청구한 대상문서가 변경입주계약의 체결계획이고, 변경한 신탁사에 관한, 그러니까 변경된 계약자에 관한 내용을 알 수 없게 지우고 부분공개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주무관〉

○ 네.

〈○○○ 위원〉

- 그 과정에 있어서 변경된 계약 내역을 공개하게 되면 이 법인의 영업상의 비밀 침해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해당하는 정보들을 비공개 처리하고 부분공개를 하신 내용인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단순히 변경된 계약자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 법인의 영업상의 비밀 침해로 볼 수 있을지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신탁 입장에서 신탁을 맡아서 지금 이 사업을 영위하는 것 자체가 본인 법인의 경영상의 비밀이다라는 취지이신 것이네요?

〈○○○ 주무관〉

○ 네.

〈○○○ 위원〉

- 서울시 입장에서는 당초 ○○과 계약할 때는 비공개대상이었지만 그 이후에 공개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공개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제3자의 입장을 고려해서 부분공개하셨다.

〈○○○ 주무관〉

○ 네.

〈○○○ 위원〉

- 69호 건을 보니까 공개하신 내용은 민원인이 직접 보낸 내용은 아니고 서울

시에서 주택도시공사에 회신을 달라고 요청한 서류를 공개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주무관>

○ 네. 저희가 의견을 SH에 보내는 문서 자체는 크게 중요한 문서는 아닙니다.

<○○○ 위원>

○ 제가 봐도 그래서요.

○ 지금 이것은 신탁이니까 사실 신탁도 등기는 다 되는 것이죠? 신탁이면 어쨌든 표면상으로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잖아요.

<○○○ 주무관>

○ 네.

<○○○ 위원>

○ 그러면 여기도 분양이기 때문에 해당토지를 매도한 형식인 것 같은데, 등기나 이런 것도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 주무관>

○ 등기는 현재 저희가 산업단지 자체가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안됐고, 준공 전에 원분양자한테 소유권이 다시 이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위원>

○ 어쨌든 ○○○○신탁 쪽에서는 제출한 민원서의 공개를 꺼리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 주무관〉

○ 네.

〈○○○ 위원〉

○ 민원서는 공개하기 어렵겠지만, 서울시에서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본 서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신탁이 들어가니까 그게 문제인 것이죠.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문 하십시오.

〈○○○ 위원〉

○ 앞으로 분양은 ○○산업개발이 할 것 아닙니까?

〈○○○ 주무관〉

○ 네.

〈○○○ 위원〉

○ 자금조달을 위해서 신탁을 한 것이죠?

〈○○○ 주무관〉

○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 보통은 분양사들이 사업권을 받은 다음 자금조달을 위해서 은행, 신탁회사에서 돈을 빌려오고 신탁계약을 하죠. 그 과정에서 신탁사들이 공개가 안 되는 것이 관행이기는 한데, 여기서는 ○○○○신탁이 하고 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알려진 것 아닙니까?

〈○○○ 주무관〉

- 일단 ○○산업개발이 그 땅을 분양 받았다는 것은 다 아는데요, ○○○○신탁이 신탁받은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 알려졌는지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 위원〉

- ○○○○신탁이 원하지 않는 것은 ○○○○신탁이 수많은 신탁을 하고 있을 텐데, 그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땅에 신탁을 해 줬고 돈을 빌려줬다는 그 자금조달 과정을 밝히기 싫은 것이지 않습니까?

〈○○○ 주무관〉

- 네.

〈○○○ 위원〉

- 어차피 완전히 분양이 된 것이 아니니까 등기는 가등기는 했을 테고, 그러면 ○○산업개발은 실질적으로는 돈을 빌리는 기간 동안만 신탁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 주무관〉

- 네.

〈○○○ 위원〉

- ○○이 분양을 끝낼 것이고, 그 다음에 실소유자가 나중에 등기를 다 올릴 것이고요. 그렇죠?

〈○○○ 주무관〉

- 네.

<○○○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

○ 일단 서남권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 주무관>

○ 저희는 강서구 마곡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일반적으로 산업시설용지 안에 연구소와 이런 지원시설이 들어가는데 연구소는 기업들로부터 땅을 입찰을 받아 평가를 해서 분양을 하고, 지원시설은 보통 식당이나 편의점 같은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가는데, 최고가 낙찰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 일반적으로 ○○○○신택의 신탁내용에 대해서 다 공개하라는 것의 영업의 비밀일 것 같은데 공공사업에 기업 입찰내용이나 계약은 당연히 공개돼야 될 것이라고 느껴지고요. 그 사업에 관해서 누가 신탁을 받았냐는 사실이 알려지면 안 되는 것인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여기에서 공개 청구하는 사실은 그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우리가 영업비밀로 보호해 줘야 되는 문제인지 의문이 듭니다.

<○○○ 위원>

○ ○○산업개발이라는 회사가 자체적인 자금조달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입주자들은 알아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회사의 자산이 충분하지 않아서 돈을 빌리는 정도가 아니고 신탁까지 시킨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 자체는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업들에서는 부도가 날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그 정도까지는 입주하려는 회

사들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선분양이기 때문에 돈을 먼저 내고 완공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인 입주계약서나 민원서를 공개할 필요는 없겠지만 명의변경까지는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 위원>

- 그래서 69호에서 부분공개 결정하신 내용은 본문은 공개하되 비공개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지우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 주무관>

- 네.

<○○○ 위원>

- 민원서가 붙임서류로 되어 있어서, 이것까지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담당공무원께서는 민원서는 비공개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시고요.
- 68번 사건에서 ‘본문은 부분공개하고 첨부물은 비공개한다.’ 그리고 본문 중에서 ‘민원인 정보를 알 수 있는 사항은 비공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민원인 정보라는 것이 ○○산업개발 주식회사라는 명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주무관>

- 네.

<○○○ 위원>

- 그 다음 붙임서류로 나와 있는 ‘변경입주계약서(안)’ 이것은 영업상 비밀 때문에 공개하기는 어렵다라고 봐서 비공개 의견이시고요? 그렇죠?

<○○○ 주무관>

○ 네.

<○○○ 위원>

○ 그런데 계약서(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계약은 체결이 안 된 겁니까?

<○○○ 주무관>

○ 이후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위원>

○ 그런데 어차피 붙임서류는 (안)인 것이고 계약서 자체는 도장 찍힌 형태로 별도 존재하는 것이죠?

<○○○ 주무관>

○ 네.

<○○○ 위원>

○ 그것은 붙임서류는 아니기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한 서류는 아니고, 그런데 공개 청구한 서류는 계약서(안)인데 안이라는 것은 아직 체결은 안 된 상태에 있는 것이죠?

<○○○ 주무관>

○ 네.

<○○○ 위원>

○ 이대로 체결이 됐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붙여놓은 상태로는 아직 체결됐

는지를 알 수 없는 상태이고, 내용이 수정되어서 체결됐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는 상태인데,

<○○○ 위원>

○ 계약이 체결이 된 것이 아닙니까? 체결계획(안) 당시에는 아니었지만,

<○○○ 주무관>

○ 네, 계약은 체결됐고,

<○○○ 위원>

○ 체결되어 있는데 그것은 일단 정보공개 대상서류는 아니니까,

<○○○ 위원>

○ 해당자료를 보니 계약서를 작성해서 계약당사자까지 기재한 겁니다. 도장만 안 찍힌..

<○○○ 위원>

○ 입주계약서(안)이 보통 통상적으로 하는 전형적인 계약서의 형태 그대로입니까? 아니면 수정된 부분이 내용이 있습니까?

<○○○ 주무관>

○ 계약상대자 외에는 똑같습니다.

<○○○ 위원>

○ 그러면 '1조1항에 입주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서 그 박스에 기재된 업체정보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까?

<○○○ 주무관>

○ 네, 그렇습니다.

<○○○ 위원>

○ 요즘 계약서는 통상적으로 공개하지 않습니까? 저는 계약서는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위원>

○ 만약 이 건 말고 개발사업 하는 곳의 입주계약을 체결한 내용에 대해서 누군가가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 입주계약 체결계획하고 계약서를 공개합니까? 아니면 일정부분이라도 비공개합니까?

<○○○ 주무관>

○ 만약에 요청이 들어왔으면 법인에 관한 정보는 빼고 다른 것은 다 공개할 수는 있습니다.

<○○○ 위원>

○ 법인에 관한 정보라고 하면 누구랑 계약을 체결했는지를 지우고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 주무관>

○ 네.

<○○○ 위원>

○ ○○○○신탁을 지운다는 말씀이시죠?

〈○○○ 주무관〉

○ 네.

〈○○○ 위원〉

○ 지금처럼 계약당사자가 변경된 케이스가 아니라 통상의 다른 건이라고 한다면 법인에 관한 정보는 지우고 입주계약 체결계획과 입주계약서를 공개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 주무관〉

○ 그런데 사실 지원시설용지에 관해서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온 건이 아직 없었습니다.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 착공예정일이나 준공예정일처럼 변경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나 계약면적, 건축연면적, 이런 사항은 가리고 공개를 해야 되지 않나 합니다. 분류번호도 사실 사업자등록증을 봐야 확인이 가능한 것이라서 가리고,

〈○○○ 위원〉

○ 계약서는 변경될 예정이 있는가와 관계 없이 공개된다고 해도 그냥 계약 당시에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고, 언제든지 변경은 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 주무관〉

○ 보통은 공개를 하는데 자사가 마곡산업단지에 입주를 한다는 사실을 굳이 보도자료나 이런 것으로 공개를 안 했으면 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 위원〉

○ 그런데 서울시에서 계약 체결하게 되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되지 않습니

까?

<○○○ 주무관>

- 자세하게는 아니고 어떤 회사가 어떤 부지에 들어오고, 주요업종은 뭐고, 이 정도는 공개하고 있습니다.

<○○○ 위원>

- 요즘은 그 기업이 싫어하든 말든 그것과 관계 없이 개인 간의 계약이 아니고 국가나 공공단체와의 계약이기 때문에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내용이 누구나 관심이 있는 사람한테 당연히 알려지는 게 맞지 않나해서 여쭙 보는 겁니다. 혹은 그게 알려지면 안 되는 이 계약의 특수성이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인 계약이라면 이 계약내용은 보통 공개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합니다.

<○○○ 위원>

- ○○○○신탁이 내가 이 계약을 했다는 것 자체를 비밀로 보고 있는 겁니까?

<○○○ 주무관>

- ○○산업개발이 땅을 분양 받아서 ○○○○신탁 회사에서 운영하는 건물에 들어간다는 사실이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들한테는 비밀은 아닌데, 전혀 모르는 제3자한테까지 알려져야 되는지가 판단하기 애매한 것 같습니다.

<○○○ 위원>

- 부지 소재지는 혹시 비밀로 볼 수 있습니까?

<○○○ 주무관>

- 아닙니다.

<○○○ 위원>

- 계약면적이 3,419 m^2 라는 점은 어떻습니까?

<○○○ 주무관>

- 그것도 아닙니다.

<○○○ 위원>

- 부지용도가 지원시설용지라는 것도,

<○○○ 주무관>

- 그것도 아닙니다.

<○○○ 위원>

- 건축연면적은 어떻습니까?

<○○○ 주무관>

- 그것은 강서구청의 건축과하고 협의된 사항인데, 구청에 건축연면적을 공개하는지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찾아보려면 찾아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

- 착공예정일하고 준공예정일은요?

<○○○ 주무관>

- 그것도 건축 허가 받을 때 기재되는 사항인데,

<○○○ 위원>

- 이 법인이 영업을 함에 있어서 이것을 남한테 알려주면 손해를 볼 가능성이

혹시 있습니까?

〈○○○ 주무관〉

○ 면적 가지고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

○ 보통 공사현장에 보면 공사개요를 적어 놓는데, 거기에도 ○○○○신탁 얘기는 전혀 안 밝혔다는 얘기입니까? 분양사는 분양 팜플렛을 만들 때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자금조달을 한다는 것을 보통 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상식으로는 마곡지구 이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

〈○○○ 주무관〉

○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

○ 시가 이렇게 체결하고 진행하는 공사는 정말 공개하면 위험한 것을 빼고는 누가 이렇게 계약을 받고, 누구한테 신탁을 맡기는지 정도의 이야기는 공개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그 공사에 대해서 모두가 ‘아, 이렇게 투명하게 진행되는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담당자 입장에서 공개를 하면 일을 처리하는 주무부서 입장에서 어떤 애로가 있습니까?

〈○○○ 주무관〉

○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회사의 사정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민원서 자체는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것은 공개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 민원서에 자금을 얼마큼 자체조달했고, ○○○○신탁을 통해서 어떻게 처리하

는지 이런 자세한 내용이 있어서 민원서 자체는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것 같고
요, 나머지는 그다지 비공개할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 위원>

○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없습니까?

<위원 다수>

○ 없습니다.

<○○○ 위원>

○ 없으시면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주무관>

○ 감사합니다.

<○○○ 위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소관부서 퇴장)

<○○○ 위원>

○ ○○○ 위원님 의견 말씀해주시죠.

<○○○ 위원>

○ 68호에 관해서는 공공산업단지 지원시설에 관한 분양계약이 시와의 계약체결
내용이라서 공개되어야 될 사안이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당초의 계
약자가 신탁회사로 변경되었다고 해서 특별하게 법적으로 달리 볼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또 ○○○○신탁 입장에서 혹시 경영상의 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 다른 요소가 있는지에 대해서 봐도 이 계약을 체결한 내용은 특별하게 달리 볼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건은 7호 사항의 경영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될 만한 내용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 69호 같은 경우에는 민원신청서에는 회사의 개별적인 영업상의 구체적인 정보가 들어가 있어서 별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 어차피 계약서를 공개하면 사실은 청구인의 청구목적은 달성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민원서를 공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크게 관심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 위원>

- 네, 저도 실질적으로는 그러할 것 같고요. 그런데 민원서 같은 경우는 근거를 어떤 것으로 해야 될까요?

<○○○ 위원>

- 만약에 비공개한다면 일단은 영업상 비밀로..

<○○○ 위원>

- 저도 민원서는 비공개에 찬성합니다.

<○○○ 위원>

- 네, 붙임서류인 69-2 민원서 같은 경우에는 7호 사유에 해당해서 비공개 대상인 것으로 하고, 그 외에 나머지 68하고 69에 해당하는 나머지 사항은 공개의견입니다.

〈○○○ 위원〉

- 민원인명 공개에 대해서는 의견 어떠십니까?

〈○○○ 위원〉

- 저는 이 사안에서 만약에 민원인 정보는 특별하게 의미가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개해도 무관하지 않을까 합니다.

〈○○○ 위원〉

- 저도 동일한데요, 민원서 자체는 영업상 비밀이 많이 기재되어 있어서 비공개 대상인 것 같고요. 어차피 서울시에서 분양하거나 이런 것들은 해당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계약 당사자는 같이 공개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 그리고 계약서 내용도 아까 보니까 특별히 거기에 보호해야 될 비밀이 기재되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법인명을 공개하는 선에서 민원서만 빼고 전체 공개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 위원〉

- 저도 마찬가지로 민원서는 비공개 의견이고요. 나머지는 다수에 따라서 가겠습니다. 큰 의견은 없는데 68번은 첫째는 계약서라는 점하고 둘째는 계약서(안)이라는 점인데, 예컨대 사법상 계약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영업상 비밀이 있을 것이라고 해서 공개를 안 해 줄 것이지 않습니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더라도 판례는 그것을 사법상 계약으로 보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기해서 공급계약이나 매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을 체결하면 다 사법상 계약으로 보고 있어서 일단 그 성질은 사법상 계약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정보공개전문위원회에서 판단할 때도 공개내용을 살펴서 계약내용에서 알려지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하면 비밀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비밀로 될 만한 사항이 있으면 법인의 입장에서 비공개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계약서라고 해도 일단 비공개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여기서는 계약서도 아니고 계약서(안)에 불과하고 공개를 하면 도장은 없이 계약서라는 이름으로 돌아다닐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과연 계약서라고 동일하게 봐도 될 것인지. 그러니까 계약체결 과정에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

○ 계약서 아닙니까?

<○○○ 위원>

○ 도장이 있어야 계약서죠. 이것은 계약서(안)이죠.

<○○○ 위원>

○ 아직 계약체결을 안 한 겁니까?

<○○○ 위원>

○ 했는데 이 상태에서는 아니고 여기에 도장이 찍혀야 정식계약서가 되거든요.

<○○○ 위원>

○ 지금 계약서를 공개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 위원〉

- 아닙니다. 붙임서류로 시설임주계약 체결계획을 공개해 달라는 것이고, 그 체결계획의 붙임서류로 계약서(안)이 붙어있고, 계약서(안)은 당사자 날인이 없기 때문에 계약서 자체는 아닙니다. 공개 청구한 대상은 맞는데 계약서 체결 과정에 있는 문서를 공개해 달라는 것은 계약서 자체를 공개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약서(안)은 계약체결과정에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당초의 안이 무엇이었는지는 당사자가 감추거나 비밀로 하고 싶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개하지 말아달라라고 요청한 상태인데 이것을 공개하는 것이 과연 맞을지 의문입니다.
- 그래서 저는 계약서 자체는 특별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아서 공개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것은 그것도 아닌 그냥 계약서를 체결함에 있어서 하나의 안에 불과한 것이어서 공개하면 오해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 위원님은 계약서(안) 부분은 비공개, 민원서류부분은 비공개, 민원서류에서 당사자 민원인 부분도 비공개 의견이십니다.

〈○○○ 위원〉

- 민원인 부분은 공개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수의견에 따라가겠습니다.

〈○○○ 위원〉

- 네, 알겠습니다.

〈○○○ 위원〉

- 저는 ○○○ 위원님하고 ○○○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68호는 전부 공개해도 상관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69호 같은 경우에는 민원서는 비공개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탁은 영업상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시를 믿고 입주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분양 후에 돈을 납부하는 겁니다. 내가 계약서를 체결하고 돈을 납부한 사람들은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이라는 회사의 자금능력이 충분한지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신탁이 신탁을 했다라는 것은 충분히 믿을 만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신탁도 공개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공적인 개발에서는 이러한 것이 공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분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 위원〉

- 알겠습니다. 저도 만약 이 계약서(안)이 계약서 내용과 다르다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엄밀하게 본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재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주무관이 이야기한 것으로 보서는 계약서와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저는 계약서(안)까지 공개하는 것으로 68호에 의견을 내고요, 민원서 부분만 비공개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건심의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68호 부분입니다. 집계 결과 참석위원 5명 중 1명이 첨부문서인 계약서 부분을 비공개한다라는 의견이 있는 이외에 나머지 모두 공개의견이기 때문에 이의신청 건을 인용한다라는 의견입니다. 69호 부분은 전원 일치로 민원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한다는 것으로 부분인용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일동〉

○ 네, 없습니다.

〈○○○ 위원〉

○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018-68호는 인용, 69호는 부분인용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안번호 2018-70 제3자 이의신청 】

안건명 : 재단법인 00000장로회 00000000재단 설립 관련 정관(기본재산, 발기인 주소 및 날인 제외), 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제외), 법인설립허가증(안)(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제외) 등

<○○○ 위원>

- 의안번호 2018-70호 문화정책과 소관 제3자 이의신청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

- 안건 소관부서 주무관은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무관>

- 문화정책과 주무관 ○○○입니다.

<○○○ 위원>

- 간사는 소관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 의안번호 제2018-70호 문화정책과 소관 제3자 이의신청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구인은 재단법인 00000장로회 00000000재단에 대한 종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서 및 붙임자료 4종의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였으나 주관부서에서는 제3자 의견조회를 거쳐 기본재산목록, 발기인 주소 및 날인, 재산총괄표, 임원취임예정자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대표자의

생년월일, 주소에 대해서 공개 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정보 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비공개하고, 이를 제외한 정관, 임원취임예정자 성명, 법인설립허가증(안)에 대해서 공개 결정하였습니다.

- 이에 제3자인 재단은 재단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비공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의신청하여 본 심의회에 이의신청 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 안전 소관부서 주무관은 간사가 낭독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 주무관>

- 없습니다.

<○○○ 위원>

-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전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안전은 주심위원 이신 ○○○ 위원님이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 이와 유사한 안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재단법인을 설립을 하고, 정보공개를 해 달라고 하면 거의 모든 노회가 공개를 못하겠다고 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부분공개 결정을 했는데 이 노회에서는 전체를 공개 못하겠다는 것이죠?

<○○○ 주무관>

- 노회에서는 정관, 재산총괄표, 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 전부에 대해서 비공개 해 달라고 하는 취지였습니다.

〈○○○ 위원〉

- 그 취지는 노회 결정사항이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이니까 시에서 부분공개든 공개든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얘기인 것이죠?

〈○○○ 주무관〉

- 네, 맞습니다.

〈○○○ 위원〉

- 그런데 재단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시에서 공개 결정을 하게 되면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 주무관〉

- 네. 그런 취지는 다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일단 제3자한테 ‘그것은 비공개사항이 안 되고 시에서 취득하여 보관하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개인정보와 법인의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정보면 공개를 한다’는 취지는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비공개 요청을 하셨습니다.

〈○○○ 위원〉

- 재단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특별히 혜택이 있는 겁니까? 설립을 안 해도 되고 해도 될 텐데 굳이 법인이 아니면 노회에서 공개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재단법인을 설립을 해서 여러 가지 세제혜택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 주무관〉

- 일단 재단법인이 되면 기부금을 받을 수가 있고, 법인격을 가지면 공공성을 갖고 운영이 더 잘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 위원>

- 00재단을 만들게 되면 개인 신자들이 내는 헌금에 대한 세제혜택뿐만 아니라 종교단체로서 00재단이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한 혜택도 받는 것이죠?

<○○○ 주무관>

- 그렇죠. 그리고 가장 큰 목적은 소속 교회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단 내에는 신탁의 개념과 유사하게 소속 교회들에 대한 재산을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

- 보통 교회 재산을 신탁을 해서 00재단의 재산으로 되어 있죠?

<○○○ 주무관>

- 그렇죠. 법상은 아니고 개념상 관리를 위한 개념인데, 신탁의 개념으로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해서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

- 그래야지만 교회를 증축할 때라거나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죠?

<○○○ 주무관>

- 네, 그렇습니다.

<○○○ 위원>

- 그런 혜택은 받겠지만 정관을 공개하지 않으시겠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 주무관>

- 기존 000000재단이라는 법인에서 0000만 별도로 독립을 해서 나오다 보니
까 그 재산 관련해서 다툼의 우려도 있고, 청구인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향후
에 발생할 소송에 대비해서 비공개로 했으면 하겠다는 것이 법인의 실제 취지
였습니다.

<○○○ 위원>

- 부분공개 결정을 한 것은 정관하고 인적사항, 그 다음에 법인설립허가증인데
정관을 공개했을 때 이 00재단이 얻게 되는 불이익이 큰 겁니까? 어떤 불이
익이 있습니까?

<○○○ 주무관>

- 저희가 보기에선 기본재산을 빼고는 사실 불이익은 없다고 봅니다.

<○○○ 위원>

- 사실은 표준정관이잖아요?

<○○○ 주무관>

- 그렇죠. 표준정관인데도 불구하고 보통 법인에서는 재단법인, 사단법인 모두
동일하게 제3자한테 공포를 하는 것을 조심스러워하면서 안 하시는 경향이 있
더라고요.

<○○○ 위원>

-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공개 결정한 사안이죠?

〈○○○ 주무관〉

○ 네.

〈○○○ 위원〉

○ 정관은 법원에서 등기를 떼면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 주무관〉

○ 그렇죠. 목적하고 중요한 사항은 공개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타 시·도의 허가를 받은 다른 법인의 정관을 찾아봐도 그 재단의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 비공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 위원〉

○ 법인 열람을 하면 이런 부분은 다 나올 텐데,

〈○○○ 주무관〉

○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안 나오고 목적, 소재지, 이런 사항만 나와서 사실은 정관이 올라와 있는 곳은 없습니다.

〈○○○ 위원〉

○ 홈페이지 말씀이시죠?

〈○○○ 주무관〉

○ 홈페이지도 그렇고, 글들을 찾아보면 소속 교회들에서 ‘정관을 보고 싶는데 못 보고 있다.’ 이런 글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 위원〉

- 등기에는 정관이 안 나오겠네요. 그런데 정관이라는 것은 자기가 단체를 만들면 이 단체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당연히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정관은 회원들이 요구하면 주게 되어 있는 것은 맞는데, 일반인 대상으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단법인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허가를 하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고, 그 순간 공적 목적으로 편입되는 것이어서 당연히 법인에서 감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 위원〉

- 재산목록은 저번 심의에서 결론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 위원〉

- 재산은 비공개하는 것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 위원〉

- 저는 ○○○ 위원님 말씀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 위원〉

- 저도 지난번에 인용했었던 것하고 달리 볼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 위원〉

- 알겠습니다. 주무관님 수고하셨고, 나가시면 됩니다.

(소관부서 퇴장)

<○○○ 위원>

- 저번에 기본재산은 아예 기본재산내역도 비공개였었나요?

<○○○ 위원>

- 재산목록 전체를 비공개했습니다.

<○○○ 위원>

- 기본재산이 재단의 중요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은 일정 금액 이상은 변경이나 처분 시에 공익법인법의 법리가 적용이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기본재산이 얼마인지도 중요한 정보인 것 같기는 합니다.

<○○○ 위원>

- 제가 알기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면 5억 이상인가를 1년에 출연을 받으면 그 회계자료 전체를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려고 하면 그것은 볼 수가 있습니다.

<○○○ 위원>

- 동의합니다. 기본재산과 그 기본재산을 초과하는 보통재산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고 공개돼야 될 정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

- 1년 동안 어떻게 돈을 거뒀고 어떻게 지출했는지를 다 공개하게 되어 있어서,

<○○○ 위원>

- 그것은 단체가 얼마나 공적 성격을 지녔는가에 따라 달리 판단돼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위원〉

- 네, 그에 따라 다르겠지요. 결론적으로는 지난번과 다른 것은 없는 것 같지만 제가 한 번 더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

- 만약 노회 교회가 100개면 그 중에서 00재단에 신탁한 교회들만 또 따로 회원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재산의 규모가 큰 데 30군데 정도만 들어가서 실제로 그 노회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 위원〉

- 그런 면에서 이 사건하고 관계 없이 정관만 공개해 주고 재산을 다 알고 싶으면 소송의 방법으로 법원을 통해서 알게 하는 것이 적절한 균형점이 아닌가 하고, 시에서 재산까지 알려주는 것은 좀 과도한 느낌입니다.

〈○○○ 위원〉

- 저는 원래 결정했던 것처럼 정관과 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과 법인설립허가증 정도만 부분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부분은 사인 간의 소송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

- 동의합니다.

〈○○○ 위원〉

- 네.

<○○○ 위원>

○ 네, 저도 동일한 의견입니다.

<○○○ 위원>

○ 그러면 집계 결과 참석위원 전원이 이의신청 건을 기각한다는 의견이므로 본 안건을 기각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 일동>

○ 네.

<○○○ 위원>

○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18-70호는 기각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

○ 이것으로 제19차 정보공개심의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